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월 12일 평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17일
- 다. 상정일자 : 제2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1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실장 김명기)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을 설명절 전 긴급히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3,28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96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68백만원이 증액된 518,996백만원, 특별회계는 54,28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968백만원이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변동이 없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12,968백만원이며,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남섭)

가. 예산안 총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3,28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6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518,99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68백만원(2.56%) 증액되고
- 특별회계는 54,28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음.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2,968백만원이
증액된 518,996백만원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기정액 대비 12,968백만원이 증액된
20,096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96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2,968백만원이
증액된 518,996백만원 임.
-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12,968백만원이 증액된 424,46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음

○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99,370백만원(19.15%)

사회복지 94,289백만원(18.17%)

기타 64,597백만원(12.45%)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 조직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74,472백만원(14.35%)

가족복지과 67,994백만원(13.10%)

행정과 63,955백만원(12.32%) 순으로 편성됨.

기정액 대비 증액된 부서는 기획실과 일자리경제과 부서이며 이는 전군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임.

○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02,078백만원(38.94%)

경상이전 186,739백만원(35.98%)

인건비 60,418백만원(11.64%)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음.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음.

마. 계속비사업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신규사업 및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 기존 계속비사업은 총26건이며,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12건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세출예산사업명세서 p135참조】

사. 종합검토의견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968백만원 규모로

○ 세입안에서

주요재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968백만원을 편성하여,

○ 세출안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 중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다음연도 상반기에 전년도 회계결산이 이루어진 후 확정됩니다.

최근 3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4,345백만원, 2019년 21,996백만원, 2020년 21,235백만원이며, 2021회계연도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은 19,96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인 군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 추경예산 편성시 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인 가용재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그에 따라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 이 밖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의사항 : 없음
- 기타 특별한 사항 : 없음

【붙임1】 202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결조서 1부.

「202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 결 조 서

1. 예산총칙

- 제1조 :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3,283,635	17,198,509
일반회계	518,995,875	15,569,876
특별회계	54,287,760	1,628,633
공기업특별회계	27,051,916	811,55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051,916	811,557
기타특별회계	27,235,844	817,07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1,419	17,1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38,700	22,161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204,594	36,138
수질개선특별회계	24,721,131	741,634

-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 제3조 :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 제4조 : 202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 와 같다.
- 제5조 :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다.
- 제6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3,260,000천원으로 한다.
- 제7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9,000,000천원으로 한다.
- 제8조 :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 예산의결 내역 : 일반회계 원안가결

※ 특별회계 :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3.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4. 계속비사업 : 해당없음

※ 신규사업 및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이 없음

5.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